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-138호

「대전광역시 건축 조례」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9월 4일

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#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안 이유

건축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, 불필 요한 규제 및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함 으로써 합리적인 건축행정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.

### 2. 주요 내용

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라 야외흡연실의 용도로 쓰이는 가설건축 물의 연면적을 50제곱미터 이하로 함(안 제24조).
- 나. 맞벽 대상 건축물의 층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(안 제41조).
- 다. 이행강제금의 감경이 가능한 위반내용 시정기간을 1년으로 정함 (안 제47조).
- 라. 자동차관련시설에 대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 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규정을 완화하고 자동차관련시설 중 운 전·정비학원은 대지안의 공지기준 적용에서 제외함(안 별표 3).

### 3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산업건설수석 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)
- 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실)

(전화 042-270-5132, FAX 042-270-5049, E-mail : lms13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### 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###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3항제4호 중 "65제곱미터"를 "50제곱미터"로 한다.

제41조제2항제3호 중 "5층"을 "맞벽되는 부분의 층수는 5층"으로 한다.

제4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"조례로 정하는 기간"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.

별표 3 제1호사목(2) 중 "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"을 "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,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)"로 하고, 제2호사목(2) 중 "자동차관련시설(상업지역내 주차장 제외)"을 "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자동차관련시설(상업지역 내 주차장,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)"로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4조(가설건축물) ① ~ ② (생	제24조(가설건축물) ① ~ ② (현		
략)	행과 같음)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4.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	4		
등으로 된 야외흡연실의 용도			
로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			
면적이 <u>65제곱미터</u> 이하인 것	<u>50제곱미터</u>		
제41조(맞벽건축) ① (생 략)	제41조(맞벽건축) ① (현행과 같		
	승)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		
3. 맞벽 건축물의 층수: <u>5층</u> 이	3 <u>맞벽되</u>		
하로 할 것	<u>는 부분의 층수는 5층</u>		
제47조(이행강제금의 감경)	제47조(이행강제금의 감경)		
<u>&lt;신 설&gt;</u>	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		
	"조례로 정하는 기간"이란 최초		
	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		
	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.		
<u>①</u> · <u>②</u>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	

### 관계 법 령

### 【 건축법 】

- 제20조(가설건축물) ① 도시·군계획시설 및 도시·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1.4.14., 2014.1.14>
  - ② (생략)
  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재해복구, 흥행, 전람회, 공사용 가설건축물</u>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,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.14>
  - ④~⑥(생략)
- 제80조의2(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)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.
  - 1. 축사 등 농업용·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)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
  - 2. 그 밖에 위반 동기,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(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
  - ② (생략)

### 【 건축법 시행령 】

제15조(가설건축물) ① ~ ④ (생 략)

-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"재해복구, 흥행, 전람회,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9.6.30., 2009.7.16., 2010.2.18., 2011.6.29., 2013.5.31., 2014.10.14., 2014.11.11., 2015.4.24., 2016.1.19., 2016.6.30.>
- 1. ~ 14. (생략)
- 15. <u>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</u> 이하인 것
- 16. (생략)
- 제81조(맞벽건축 및 연결복도)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 <개정 2008.10.29., 2012.12.12., 2014.10.14., 2015.9.22.>
  - 1. 상업지역(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)
  - 2. 주거지역(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)
  - 3.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·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
  - 4. 건축협정구역
  - ② ~ ③ (생략)
  - ④ 제1항에 따른 지역(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)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,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8.10.29., 2014.10.14.>

### ⑤ ~ ⑥ (생략)

### [전문개정 1999.4.30.]

- 제115조의4(이행강제금의 감경)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 - 1.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
  - 2.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(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
  - 3.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(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,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)
  - 4.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 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(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)
  - 5.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 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
  - 6.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 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(처 리시설을 포함한다)의 경우
  - 7.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

-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.
- 1.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: 100분의 50
- 2. 제1항제7호의 경우: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
-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.
- 1.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: 100분의 80
- 2.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: 100분의 60 [본조신설 2016.2.11.]

###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발 의 의 원 명 단

연번	의원명	서명	비고
1	2/1/5	12	
2	烈龙动	26)	
3	以功元	13	
4	女 公子	Brus	
5	7h 3/1)	7h 34m	-
6	271126	Me	
7	bl 01 L	em 6	
8			
9			
10			
11			
12			
13			
14			
15			